

제 258 회 임시회
2007. 3. 19 ~ 3. 28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2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2월 20일

3. 제안이유

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지역내 유휴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반도체 관련기업에게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나. 대청호 주변의 수산자원 개발을 통한 내수면어업 발전 및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재산취득)

(1) 위치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일원

(2) 매입규모 : 2필지 108,697m²(32,880평)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공장용지, 98,905m²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13번지, 공장용지, 9,792m²

(3) 사업기간 : 2007. 3 ~ 4 (2개월)

(4) 사업비 : 33,000백만원(도비 16,500 · 청주시비 16,500)

※ 108,697m²중 50%인 54,348.5m²를 지분으로 취득

나.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1) 위치 :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394-2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7필지 17,268m²(내역 따로 붙임)

- 건물신축 : 5동 3,227m²(사무실, 관리사, 실내양어시설 등)

- 구조물 : 5식 4,520m²(양어시설, 침전조 등 부대시설)

(3) 사업기간 : 2007. 3 ~ 2008.12 (2년간)

(4) 사업비 : 3,995백만원(국비 50% · 도비 50%)

5. 검토의견

가. 대규모 기업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등 공장용지 2필지 108,697m²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규모 시설투자 부지를 청주시와 각각 50%씩 공동지분으로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하이닉스가 빠른 시일내에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공장부지를 하이닉스가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이유와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나.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신축

대청호를 비롯한 남부권의 내수면 수산자원 개발과 수중 생태계 보존 등을 담당할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 취득과 청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내수면연구소의 입지조건으로는 풍부한 수량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청사 부지 17,268m² · 청사 5동 3,227m² · 부대시설 5식 4,520m²와 사업비 3,995백만원의 산출근거, 그리고 신축예정지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¹⁾(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로 청사건립 가능여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심사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붙 임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 농지법 第30條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農地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農業振興地域을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은 다음 各號의 用途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農業振興區域: 農業의 振興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的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규모로 農地가 集團化되어 農業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地域

가. 農地造成事業 또는 農業基盤整備事業이 施行되었거나 施行중인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나. 가목에 해당하는 地域외의 地域으로서 農業用으로 이용하고 있는 土地가 集團化되어 있는 地域

2. 農業保護區域: 農業振興區域의 用水源確保, 水質保全등 農業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